

5주차

# 한국전쟁 전후 피난과 정착

김아람

## 학습목차

### 학습목표

### 학습내용

#### 01. 피난 시기와 규모

- 한국전쟁 피난민의 지역별, 시기별 규모

#### 02. 피난 경로와 임시 생활

- 피난민 대책과 수용 관련법
- 피난 경로 지시

#### 03. 북한으로부터의 피난길

- 흥남 철수
- 서해안 지역 피난과 미 수송선의 모습

#### 04. 난민정착사업의 실시

- 복귀가 불가능한 피난민과 난민정착사업 시작
- 난민정착사업 규모와 사례 지역

#### 05. 농지 조성 노력과 정착

- 개간과 간척 과정
- 정착사업에서의 원조와 피난민 차별 문제

## 2차시

# 피난 경로와 임시 생활

## 학습목차

### 학습목표

- 피난민 수용 대책과 법률을 통해 피난민과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 상황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.
- 지정된 피난 경로와 규정이 출신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졌음을 설명할 수 있다.

### 학습내용

- 피난민 대책과 수용 관련법
- 피난 경로 지시

# 피난민 대책과 수용 관련법



부산 피난민 수용소의 숙소를 점검중인 UN측 인사들

# 피난민 구호대책 요강(1950.8.24.)

## 1. 원칙

1) “피난민은 승리를 위한 일선 희생자”

“정부와 민간은 협력하여 피난민 구호에 만전”

2) 대구-영천-경주-포항 등 지점을 통한 직선의 이남 및

대구-경산-청도-밀양-창원의 제(諸)지점을 통한 선 이동(以東)의 지역

기타 완전한 지역 및 제주도 내에 피난민을 수용

## 2. 조직

1) 각 가정

2) 수용소 정원은 1만~2만 명

3. 피난민 수용소의 시설

4. 피난민 수용소 운영

# 피난민 대책과 수용 관련법

#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(법률 제146호, 1950.9.25, 일부개정)

귀속재산 중 주택, 여관, 요정 기타 수용에  
적당한 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 
피난민의 인원과 피난기일을 지정하여  
수용을 명령할 수 있다.

#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(법률 제146호, 1950.9.25, 일부개정)

---

귀속재산 이외의  
주택, 여관, 요정 기타수용에 적당한 건물의  
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 
피난민의 수용을 명령할 수 있다.

#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(법률 제146호, 1950.9.25, 일부개정)

---

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 
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 
백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
# 함께 살아가기

“ 여기 온 사람은 집을 빌리고 하니까 초가집 다- 낡은 집에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집에, 우리 주인 양반이, 다- 그냥 할망이 노망을 해가지고 막 집을 다 뜯어놓은 거 그 집을 빌어 가지고 다- 수리했어. 한쪽엔 경찰이 살고 우리가 살고 그러는데 녀들이 그러더라고, 그거 고쳐도 소용없다 주인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 뺏는다 그거야. 정말 깨끗이 해놓으니까 나가라잖아 ”

제주 성산읍

# 함께 살아가기

“ 정해진 집으로 가니까 딸만 아홉을 낳은 집이야, 당시에 우리는 3형제야. 내 동생, 제일 밑에 동생, 나 3형제야. 그 집 마루에다 짐을 갖다놔는데, 이불보따리하고 소달구지 갖다놔는데, 아들 셋이라고 안 된대요. 딴 집을 가라 그러더라고. 그 집에 가니까 [주인이] 나이는 젊었는데, 딸만 낳아가지고 죽고 아들도 없고, 자식이 없어. 그 집에서 또 쫓겨난 거야. ”

-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

# 피난 경로

## 피난민 소개 및 구호요강(1950.12.15.)

---

- 피난민 통로 지시

1. **황해지구의 피난민**은 선박을 이용해야 인천으로 경유 또는 직접 당진 및 서산으로 도착해야 홍성 경유 남하하여야 한다.

2. **이북 및 개성지구 피난민**은 수색에서 소사를 경유 발안리를 통과해야 아산 이남 지정도로를 남하하여야 한다.

# 피난 경로

## 피난민 소개 및 구호요강(1950.12.15.)

---

- 피난민 통로 지시

3. 강원도 지구 피난민은 용인을 경유하여 온양에 지(至)하여야 남하하여야 한다.

4. 기타 피난민은 지시도로에 의하여 남하하되 국도 또는 군사도로는 일반피난민의 통과를 불허한다.

# 피난 경로

## 피난민 소개 및 구호요강(1950.12.15.)

### ■ 피난 장소 지정

1. 국방부·내무부·사회부에서 합의 결정된 피난 장소에 소개하여야 한다.
2. 소개 장소는 **4개 지구로 구분**한다.

제1지구 - 경상남북 지구

제2지구 - 전라남도 일부 전라북도 지구

제3지구 - 충청남도 지구

제4지구 - 제주도 지구

# 피난 경로

## 피난민 소개 및 구호요강(1950.12.15.)

---

피난 장소 지정

3. 각 지 소개민은 그 이재지에 따라 지정장소로 소개하여야 한다.

1) 38이북 피난민 - 충청남도과 전라남북도

2) 서울과 경기지구 피난민

A. 일반시민은 전라남북도

B. 기타 피난민은 경상북도

# 피난 경로

## 피난민 소개 및 구호요강(1950.12.15.)

---

- 이동하기 쉬운 경로
- 출신 지역별
  - 38선 이북, 북한지역 피난민 서쪽 방향
  - 일반, 기타

# 마무리

---

- 이번 시간
  - 피난민과 함께 살기, 피난 경로 규정

# 다음 차시에는

---

-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가장 먼 피난

[출처01] NARA (RG111-SC-348610)

[http://archive.history.go.kr/image/viewer.do?catalog\\_id=AUS005\\_06\\_02V0000\\_466&gid=AUS005\\_06\\_02V0000](http://archive.history.go.kr/image/viewer.do?catalog_id=AUS005_06_02V0000_466&gid=AUS005_06_02V0000)

[출처02] 민주신보

「국무회의, 피난민 구호 대책 요강을 결정」, 『민주신보』 1950. 8. 26.

[출처03]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<https://www.law.go.kr/lsSc.do?section=&menuId=1&subMenuId=17&tabMenuId=93&eventGubun=060101&query=%ED%94%BC%EB%82%9C%EB%AF%BC#undefined>

[출처04] 한국학중앙연구원 성과 포털 - 월남민 구술생애사

[http://waks.aks.ac.kr/rsh/dir/rview.aspx?rshID=AKS-2014-KFR-1230004&callType=srch&dataID=AKS-2014-KFR-1230004\\_DES@033](http://waks.aks.ac.kr/rsh/dir/rview.aspx?rshID=AKS-2014-KFR-1230004&callType=srch&dataID=AKS-2014-KFR-1230004_DES@033)

[출처05] 국사편찬위원회- 2014년도 수집 구술자료

1950-60년대 난민정착사업과 농업기반 조성 COH011\_06\_00A0002

[출처06] 국가기록원

사회부, 「피난민 소개 및 구호 요강 송부에 관한 건」 (1950. 12. 15), 『정부소개대책관계서류』, 1950(국가기록원, BA0852069)



YONSEI  
UNIVERSITY  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봉규 정다영

교안

이유정

영상

김록현